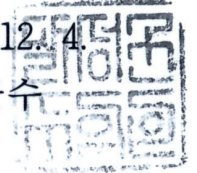


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

의 안	1904
번 호	

제출일자 : 2020. 12. 4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출사유

- 가.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.
- 나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제출근거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
- 다. 「장기 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」

3. 주요내용

- 가. 2018년 군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(집행)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(307개소) 및 2020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된 도시계획시설(1개소) 총 308개소
 -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
- 나.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
 -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

4. 도시계획시설 현황

가.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(달성군 소관) 2,977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363개소

나. 금회 의회보고 대상인 2020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연구 시설(DGIST) 1개소, 2018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(집행)되지 아니한 시설은 307개소

(2020. 12. 31.기준)

시설 구분	시설 세분	전체		집행		미집행시설						집행률 (%)
						미집행전체		10년미만		10년이상 20년미만		
		건수	면적 (㎡)	건수	면적 (㎡)	건수	면적 (㎡)	건수	면적 (㎡)	건수	면적 (㎡)	
합 계		2,977	12,792,658	2,614	11,752,107	363	1,040,551	55	229,457	308	811,094	87.8
도 로	소계	2,300	5,587,111	2,004	5,083,795	296	503,316	48	115,417	248	387,899	87.1
	중로	320	2,314,160	312	2,280,307	8	33,853	1	15,497	7	18,356	97.5
	소로	1,980	3,272,951	1,692	2,803,488	288	469,463	47	99,920	241	369,543	85.5
궤 도	궤도	1	45,663	—	—	1	45,663	1	45,663	—	—	—
주차장	노외주차장	97	173,928	66	157,118	31	16,810	1	213	30	16,597	68.0
광 장	경관광장	1	19,650	—	—	1	19,650	1	19,650	—	—	—
공 원	소계	92	219,446	70	152,936	22	66,510	3	47,200	19	19,310	76.1
	어린이공원	67	146,277	61	136,827	6	9,450	—	—	6	9,450	91.0
	소공원	22	16,961	8	6,721	14	10,240	1	380	13	9,860	36.4
	문화공원	3	56,208	1	9,388	2	46,820	2	46,820	—	—	33.3
공공공지	공공공지	88	231,116	87	229,802	1	1,314	1	1,314	—	—	98.9
녹 지	소계	189	1,795,784	179	1,740,221	10	55,563	—	—	10	55,563	94.7
	완충녹지	130	1,561,434	120	1,505,871	10	55,563	—	—	10	55,563	92.3
	경관녹지	49	143,570	49	143,570	—	—	—	—	—	—	100.0
	연결녹지	10	90,780	10	90,780	—	—	—	—	—	—	100.0
연구시설	연구시설	5	1,440,595	4	1,108,870	1	331,725	—	—	1	331,725	80.0
기타시설	기타시설	204	3,279,365	204	3,279,365	—	—	—	—	—	—	100.0

5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

○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

(2020. 12. 31.기준)

구 분	시설구분	시설세분	시설수	미집행면적(㎡)	비 고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	총 계		308	811,094	
	도 로	합 계	248	387,899	
		중 로	7	18,356	
		소 로	241	369,543	
	주 차 장	노외주차장	30	16,597	
	공 원	합 계	19	19,310	
		어린이공원	6	9,450	
		소공원	13	9,860	
	녹 지	완충녹지	10	55,563	
	연구시설	연구시설	1	331,725	DGIST

○ 2020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

(2020. 12. 31.기준)

구 분	시설구분	시설세분	시설수	미집행면적(㎡)	비 고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	총 계		1	331,725	
	연구시설	연구시설	1	331,725	DGIST

○ 2018년 보고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 (집행)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

(2020. 12. 31.기준)

구 분	시설구분	시설세분	시설수	미집행면적(㎡)	비 고
2018년 보고한 시설 중 2년이 지난 시설	총 계		307	479,369	
	도 로	합 계	248	387,899	
		중 로	7	18,356	
		소 로	241	369,543	
	주차장	노외주차장	30	16,597	
	공 원	합 계	19	19,310	
		어린이공원	6	9,450	
		소공원	13	9,860	
	녹 지	완충녹지	10	55,563	

6.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

○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363개소(군비 362, 국·시비 1)

※ 연구시설(DGIST)은 국·시비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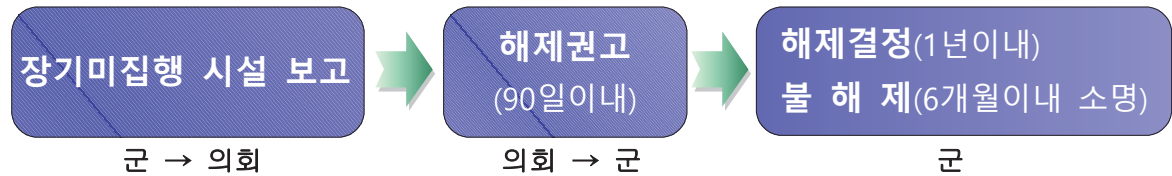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㎡, 억 원)

구분	시설 구분	합 계			2021년~2023년 (1단계)			2024년~2026년이후 (2단계)		
		물량		금액	물량		금액	물량		금액
		개소	면적		개소	면적		개소	면적	
총 계		363	1,040	5,732	150	431	1,659	213(1)	609	4,073
군비	소 계	362	715	1,970	149	396	1,254	213	312	716
	도 로	296	503	1,171	123	261	584	173	242	587
	궤 도	1	46	310	1	46	310	—	—	—
	주 차 장	31	17	54	—	—	—	31	17	54
	경관광장	1	20	196	1	20	196	—	—	—
	공 원	22	66	137	13	13	62	9	53	75
	공공공지	1	1	26	1	1	26	—	—	—
	녹 지	10	55	76	10	55	76	—	—	—
국·시·비	연구시설	1	332	3,762	1	35	405	(1)	297	3,357

참고 1

의회보고 절차 및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

○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



○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

-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
- 중·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(도시개발계획, 환경 등)
-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

참고 2

상위 및 관계법령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(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.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

제42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)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)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

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·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·군계획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.

1.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)
 2.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명칭,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, 위치, 규모, 미집행 사유, 단계별 집행계획, 개략 도면,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
 3.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 등 중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,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

제95조(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붙임 : 1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서(별첨)
2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(별첨)